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예비군대대 운영규정
2. 규정류 개정사유 :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일부내용 추가
3. 주요내용
 - 가. 내용 수정 및 보완 : 전입신고,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구체화, 대상별 교육훈련시간, 소집통지서 전달, 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등
 - 나. 추가 : 훈련지원,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안전통제, 개인정보보호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2026년 9월 1일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령, 예비군 조직 및 편성에 관한 훈령
예비군 길라잡이, 51사단 예비군교육훈련지시
 - 나. 예산조치 :
 - 다. 관련부서 : 예비군대대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1부
 - 나. 규정류 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6월 19일

예비군대대
소관부서 : 장응욱 

관련부서 : (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3조(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table><tr><th>구분</th><th>훈련시간</th><th>항방 기본훈련</th><th>항방 작계</th><th>동원훈련</th></tr><tr><td>교수</td><td>8</td><td>8</td><td>0</td><td>0</td></tr><tr><td>직원· 조교</td><td>36</td><td>0</td><td>12</td><td>24</td></tr><tr><td>학생</td><td>8</td><td>8</td><td>0</td><td>0</td></tr></table>	구분	훈련시간	항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	동원훈련	교수	8	8	0	0	직원· 조교	36	0	12	24	학생	8	8	0	0	제13조(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2026.00.00.) <table><tr><th colspan="5">(시간)</th></tr><tr><th>구분</th><th>훈련시간</th><th>기본훈련</th><th>작계훈련</th><th>동원훈련I 형(II형)</th></tr><tr><td>교수</td><td>8</td><td>8</td><td>0</td><td>0</td></tr><tr><td>직원· 조교</td><td>24(32) [1~6년차] 20 [5~6년차]</td><td>8 [1~6년차]</td><td>12 [5~6년차]</td><td>24(32) [1~6년차]</td></tr><tr><td>학생</td><td>8</td><td>8</td><td>0</td><td>0</td></tr></table>	(시간)					구분	훈련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I 형(II형)	교수	8	8	0	0	직원· 조교	24(32) [1~6년차] 20 [5~6년차]	8 [1~6년차]	12 [5~6년차]	24(32) [1~6년차]	학생	8	8	0	0	1. 대상별, 훈련과정별 시간 구체화 2. 훈련과정 용어 수정 : 항방0000 →삭제
구분	훈련시간	항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	동원훈련																																											
교수	8	8	0	0																																											
직원· 조교	36	0	12	24																																											
학생	8	8	0	0																																											
(시간)																																															
구분	훈련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I 형(II형)																																											
교수	8	8	0	0																																											
직원· 조교	24(32) [1~6년차] 20 [5~6년차]	8 [1~6년차]	12 [5~6년차]	24(32) [1~6년차]																																											
학생	8	8	0	0																																											
제14조(위탁교육훈련 실시) <u>예비군교육훈련은 예비군대대장 책임 하에 지휘관리부대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u>	제14조(위탁교육훈련 실시) <u>예비군훈련은 예비군대대장 책임 하에 지휘관리부대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u> ① 훈련장소는 수원화성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6.00.00.> ② 훈련시 학생예비군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 등록 및 훈련을 참여한다.<신설 2026.00.00.> ③ 훈련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연기 등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④ 무단으로 훈련을 불참한 경우에는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다음 훈련이 부과한다.<신설 2026.00.00.>																																														
제15조(교육훈련 결과 입력) ① <u>예비군교육훈련 결과 입력은 지휘관리부대에서 실시한다.</u>	제15조(교육훈련 결과 입력) ① <u>예비군교육훈련 결과 입력은 예비군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개정2026.00.00.)</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회수) ① 예비군 교육소집통지서는 교육실시 14일전까지 해당 학과장(조교)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전달한다. ② 통지서는 본인이 지참하여 교육훈련에 참석하여 총기수령 등 신분확인용으로 제출한다.	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① <u>예비군 소집통지서는 교육실시 30일전에 예비군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개개인에게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전까지(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u>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방법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수령증은 학과장(조교)이 회수하여 예비군대대에 제출하여 교육훈련 불참 등으로 인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훈련지원 사항 “없음”	② 모바일 전자고지는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고지일 포함)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후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 7일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0.00.) ③ <삭제 2026.00.00.> 제18조(훈련지원) 학생예비군 훈련성과를 위해 학교에서는 편의를 지원하며 예비군대대장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계획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하고 결과를 유지한다.<신설 2026.00.00.>	추가 *학생예비군 편의지원 개념 추가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없음”	제19조(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총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아야 하며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제5조 8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00.00> ① 예비군대대장은 학생예비군 훈련기간에는 해당 학생의 학과의 교수 또는 조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훈련대상 인원과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 결석처리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② 훈련 후 무단불참 또는 연기자는 해당 학과로 추가 협조문을 발송하여 해당일에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한다. 수업을 불참 시에는 결석처리가 가능하다.[본조신설 2026.00.00.]	예비군법 관련 규정 추가 -학생예비군 출석처리 협조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관련 예비군법 규정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안전통제 “없음”	제20조(안전통제) 예비군대대장은 학생 예비군 훈련시 입소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현장에 위치하여 안전통제를 병행한다. <신설 2026.00.00.>	학생예비군 훈련시 안전통제 추가
개인정보보호 “없음”	제21조(개인정보보호) 학생예비군 인적사항과 관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군번 등 개인정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 외에는 열람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문서로 발송할 경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6.00.00.>	문서작성 및 발송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사항 추가
제18조(동원훈련) 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손실보충요원으로 편성하며 동원훈련은 제외한다. 다만, 학교에 미 신고하여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발행시는 우선 재학증명서 1부를 병무청에 제출 후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 동원훈련을 보류한다	제22조(동원훈련) ① 학생예비군은 학업보장을 위하여 방침일부보류자로 분류하며 동원훈련은 제외한다. 다만, 학교에 미신고하여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발생하는 우선 대학 홈페이지 웹지원시스템에 예비군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예비군대대는 직권으로 신고한 학생을 방침일부보류자로 관리한다. (개정 2026.00.00.)	1. 용어 수정 :손실보충요원 → 방침일부보류자 2. 보류원서 제출 및 신고 방법 수정
②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 지휘관의 계급 및 부대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23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 <u>지휘관(자)</u> 의 계급 및 부대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0.00.)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1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 지휘관의 정년 및 선발시험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지휘관 정년 및 선발시험) <table><tr><th>구분</th><th>정년</th><th>계급/선발시험</th><th>임명권자</th></tr><tr><td>대대장</td><td>60세</td><td>중령/국방부</td><td>국방부장관</td></tr></table> (개정 2026.00.00.)	구분	정년	계급/선발시험	임명권자	대대장	60세	중령/국방부	국방부장관	1. 관련 조항 수정 2. 현 장안대 예비군대대 체대규모 지휘관만 명시
구분	정년	계급/선발시험	임명권자							
대대장	60세	중령/국방부	국방부장관							
제23조(구성) ① 예비군대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1인, 부의장1인, 위원4인, 간사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총장, 부의장은 총무처장, 위원은 총무과(팀)장·학생지원처과(팀)장·관리과(팀)장·교무과(팀)장이 되고,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이 된다. ④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의장대리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원 4인, 간사 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③ 의장은 총장, 부의장은 총무처장, 의원은 총무과(팀)장·학생지원처과(팀)장·관리과(팀)장·교무과(팀)장이 되고,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6.00.00.) ④ (현행과 같음)	1. 용어 수정 :위원 → 의원								
제26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① (생략)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2. 「예비군 실무편람」	제30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개정 2026.00.00.) 2. 예비군훈련 길라잡이, 사단 예비군교육훈련 지시 (개정 2026.00.00.)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제18조(동원훈련)	제22조(동원훈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9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	제23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	현행과 동일(조항번호 정비)
제20조(직급)	제24조(직급)	
제21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	제25조(지휘관정년 및 선발시험)	
제22조(대대본부 편성)	제26조(대대본부 편성)	
제24조(임무)	제28조(임무)	
제25조(회의)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u>제적의원</u> 과반수의 참석과 <u>출석의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1. 용어 수정 :위원 → 의원 :인원 → 의원

예비군대대 운영규정

공포 제2026-3호(개정 2026.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에 재학(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학생을 대학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여 총력안보태세 확립과 직장방위 능력을 배양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기 위하여 대학직장예비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직장예비군**을 조직, 편성, 자원관리 및 지휘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2026.00.00.)

제3조(명칭 및 직제) 이 규정에 의한 예비군 부대는 장안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라 칭하며(이하 “예비군 대대” 라 한다), 부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조직, 편성, 자원관리 및 지휘관리

제4조(편성대상) 예비군대대의 편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 고용원 중 예비군
- 지원자

제5조(편성기간) 학생예비군의 편성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개정2026.00.00.)

제6조(편성규제) 본 대학교의 학생은 타 직장 및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었어도 본 대학교 예비군대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입신고) 교원 및 학생예비군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6.00.00.>
- ② 학생예비군은 학교 홈페이지 웹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비군대대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입 조치한다. <신설 2026.00.00.>

제8조<삭제>

제9조(자원관리) ① 예비군자원은 예비군대대에서 관리하며 자원현황은 매 월말 168여단 1대대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하며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반기 1회 학생예비군 자원정비 결과를 통해 현황을 통보한다.

② 학생예비군 중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의 학적변동 사유 발생 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 및 거주지로 3일 이내로 전출 요청한다.

제10조(지휘관리) 51사단 168여단 1대대에서 지휘관리한다.(개정2026.00.00.)

제3장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과목)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과목은 육군 참모총장의 예비군훈련 규정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수임군부대의 예비군교육훈련지시에 의거 실시한다.(개정2026.00.00.)

- ① 교육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이다.<신설 2026.00.00.>
- ② 교육과목은 안보교육, 개인화기사격, 영상모의사격,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시가지전술 등 5과목이다. <신설 2026.00.00.>

제12조(교육훈련 일정) 매년 초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교육훈련(1학기·2학기), 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전년도 미 훈련) 일정을 확정한다.

제13조(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은 국방부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시간)				
구 분	훈련시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I형(II형)
교 수	8	8	0	0
직원·조교	24(32) [1~6년차] 20 [5~6년차]	8 [1~6년차]	12 [5~6년차]	24(32) [1~6년차]
학 생	8	8	0	0

제14조(위탁교육훈련 실시)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대대장 책임 하에 지휘관리부대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① 훈련장소는 수원화성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신설 2026.00.00.>
- ② 훈련시 학생예비군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 등록 및 훈련을 참여한다.<신설 2026.00.00.>
- ③ 훈련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연기 등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 ④ 무단으로 훈련을 불참한 경우에는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다음 훈련이 부과한다.<신설 2026.00.00.>

제15조(교육훈련 결과 입력) ① 예비군 교육훈련 결과 입력은 예비군 교육훈련대에서 실시한다.(개정 2026.00.00.)

- ② 예비군대대에서는 교육훈련불참자를 확인하여 보충교육 훈련을 교육훈련 주기에 실시한다.

제16조(교육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한다.

- 1. 해당 년도 전역자
- 2. 국가유공자(의가사 제대)
- 3. 제 13조 규정의 대상별 교육훈련 시간 이수자

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 ①예비군 소집통지서는 교육실시 30일전에 예비군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개개인에게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전까지(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 모바일 전자고지는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고지일 포함)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후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 7일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0.00.)

③ <삭제 2026.00.00.>

제18조(훈련지원) 학생예비군 훈련성과를 위해 학교에서는 편의를 지원하며 예비군대대장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계획 보고서 포함하여 보고하고 결과를 유지한다.<신설 2026.00.00.>

제19조(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총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아야 하며 예비군법 제10조의2와 제5조 8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00.00>

① 예비군대대장은 학생예비군 훈련기간에는 해당 학생의 학과의 교수 또는 조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훈련대상 인원과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② 훈련 후 무단불참 또는 연기자는 해당 학과로 추가 협조문을 발송하여 해당일에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한다. 수업을 불참 시에는 결석처리가 가능하다.[본조신설 2026.00.00.]

제20조(안전통제) 예비군대대장은 학생예비군 훈련시 입소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현장에 위치하여 안전통제를 병행한다. <신설 2026.00.00.>

제21조(개인정보보호) 학생예비군 인적사항과 관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군번 등 개인정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 외에는 열람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문서로 발송할 경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6.00.00.>

제4장 동원훈련

제22조(동원훈련) ① 학생예비군은 학업 보장을 위하여 방침일부보류자로 분류하며 동원훈련은 제외한다. 다만, 학교에 미신고하여 동원훈련 소집통지서가 발생 시는 우선 대학 홈페이지 웹지원시스템에 예비군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예비군대대는 직권으로 신고한 학생을 방침일부보류자로 관리한다.(개정 2026.00.00.)

② 작전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한하여 실시하며 학생은 작전동원에서 제외한다.

③ 전시동원대상자는 해당 병무청에서 전시개별동원으로 관리한다.

제5장 지휘관 및 본부요원 편성

제23조(지휘관 계급 및 부대규모) 지휘관(자)의 계급 및 부대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00.00.)

구 분	소 대	중 대	대 대	연 대	여 단
계 급	중 사	대 위	중 령	대 령	대 령
인원(명)	41~80	81~400	401~1,600	1,601~7,200	7,201이상

제24조(직급) 직급은 다음과 같다.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원사	상·중사	하사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25조(지휘관 정년 및 선발시험) 지휘관의 정년 및 선발시험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 년	계급/선발시험	임명권자
대대장	60세	중령/국방부	국방부장관

(개정 2026.00.00.)

제26조(대대본부 편성) 대대본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제대구분	직 책	계급(예비역)	인원	직 책	임명권자
대 대	대대장	중 령	1명	대대장	국방부장관
	참 모	소령 및 대위	1명	소령 : 과장 대위 : 계장	총 장
	실무자	병	1명	계원	총 장

제6장 직장예비군 통합협의회 운영

제27조(구성) ① 예비군대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원** 4인, 간사 1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6.00.00.)

③ 의장은 총장, 부의장은 총무처장, **의원**은 총무과(팀)장·학생지원처과(팀)장,·관리과(팀)장·교무과(팀)장이 되고, 간사는 예비군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6.00.00.)

④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의장대리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무) 방위협의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평시 대비 정규정 대비책을 수립,수행,조정하며 지역방위작전 지원
2. 예비군대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 지원, 협조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2회(1월, 7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 시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제7장 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제30조(기록관리 및 관계법령) ① 이 규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0.00.)

1.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2. 예비군훈련 길라잡이, 사단 예비군교육훈련 지시 (개정 2026.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